

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2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안이유

- 의장·부의장 선거 시 단독 후보로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투표로 당선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단서 조항 신설(제8조제1항)

다만, 의장·부의장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71조

5. 공고기간

- 공고기간 : 2018. 10. 12. ~ 2018. 10. 16.(5일간)
-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6. 규칙안(제2장) : 붙임

7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 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장성군의회 회의 규칙

제 2 장 의장과 부의장

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다만, 의장·부의장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한다.

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등록은 서로 중복하여 할 수 없다.

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 및 투표 용지 등의 순서는 다선, 연장자순으로 한다.

⑦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.

②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(임시의장의 선거)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고,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에 준하여 실시한다.

제11조(의장·부의장의 사임)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